

주택화재보험 상품요약서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 가입자격

- 아파트, 맨션, 연립, 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물건(재물)의 특성 및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 사고발생의 위험의 크기에 따라 회사의 인수지침에 의해 보험가입 또는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 이 상품의 보험기간(보험회사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은 통상 1년이며, 보험료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 보험이므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 보장의 종류 및 보험금지급사유

보장명		보험금 지급사유
기본계약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화재(벼락포함), 폭발, 파열로 인한 재물 손해
선택계약	전기위험 특별약관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
선택계약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풍재 또는 수해로 생긴 손해
선택계약	지진위험 특별약관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선택계약	확장위험 특별약관(Ⅰ)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생긴 손해
선택계약	확장위험 특별약관(Ⅱ)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생긴 손해

선택계약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 특별약관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해 발생한 손해
선택계약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특별약관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선택계약	도난위험 특별약관	강(절)도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
선택계약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특별약관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선택계약	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별약관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선택계약	유리손해 특별약관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생긴 파손의 손해
선택계약	악의적인 파괴행위 특별약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보험의 목적에 생기 손해
선택계약	폭음파 특별약관	폭음파에 기인하거나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
선택계약	재조달가액 특별약관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 재조달가액을 보상
선택계약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글그림, 골동품, 원고, 설계서 등의 목적물에 대해 계약 체결시 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하고 그 금액을 보험기간중의 보험가액으로 함.
선택계약	가액협정 특별약관	보험의 목적을 평가하고 건물인 경우의 평가액은 보험의 목적에 전부손해가 생겼을 경우 재조달가액에 의해 정함. 보험가입금액은 약정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을 전액 지급함.
선택계약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특수건물(동산 제외)의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
선택계약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 특별약관	특수건물(동산 제외)의 항공기 또는 그로 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선택계약	실화(대물)배상책임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구내에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선택계약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특수건물에서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인명피해가 발생시 과실여부 상관없이 피해자 1명당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선택계약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특수건물에서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재물피해가 발생시 과실여부 상관없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보상합니다.

$$\text{보험금}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보험금에서 제외합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부터 해당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 산출기초 및 보험료 예시

□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회사가 대표적으로 정하는 가입조건에 따른 보험료 예시

- 보 험 기 간 : 1년
- 보 험 목 적 물 : 건물 1억원, 일반가재 1천만원 (단독주택 3층건물)
- 건 물 구 조 : 조적조 슬라브집 콘크리트외벽(구조급수 1급)
- 보 장 내 용 : 화재(기본계약), 급배수설비누출손해(선택계약)

보장명		보험가입금액	영업보험료
기본계약	화재(건물)	1억원	12,300원
	화재(일반가재)	1천만원	1,200원
선택계약	급배수설비누출손해(건물)	1억원	6,500원
계			20,000원

※ 상기보험료는 요율변동 및 가입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5. 기타 알아 두실 사항

Q)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차이점 및 보상과의 관계는?

A)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 계약자가 임의로 설정하며 계약상의 보상한도가 됩니다. 보험가액은 가입한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말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의 시가로 결정하며, 법적인 보상한도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보다 작지 않아야 하며, 만일 작을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만 보상받게 됩니다.

Q) 주택외의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여부는?

A) 보험에 가입하실 때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가재도구도 가입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아니어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보험금 수령권자는?

A) 화재보험은 소유자가 아니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는 소유자로 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은 계약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에게 지급됩니다.

Q) 화재 이외에 풍수재 등 다른 위험에 대한 보장은?

A) 주택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 폭발, 낙뢰위험을 보장합니다. 풍수재 등 다른 위험을 추가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해당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특약을 가입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일부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